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)

- (제정) 2007.06.12 조례 제1750호
- (일부개정) 2015.09.23 조례 제2135호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
- (전부개정) 2017.09.22 조례 제2255호
- (일부개정) 2018.12.31 조례 제2374호
- (일부개정) 2019.10.15 조례 제2438호
- (일부개정) 2019.12.12 조례 제2457호
- (일부개정) 2020.05.27 조례 제2495호
- (일부개정) 2021.12.31 조례 제2600호 국가보훈 기본법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 12. 31., 2021. 12. 31.>

제2조(정의)

-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"희생·공헌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 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가.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
- 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- 다.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- 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- 2. "국가보훈대상자"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 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- 3. "국가보훈관계 법령"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
- 4. "보훈단체"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.
- 5. <삭제 2021. 12. 31.>
- 6. <삭제 2021. 12. 31.>

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

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합천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이하 "참전유공자의 배우자"라 한다)로 한다. <개정 2018. 12. 31., 2021. 12. 31.>

제4조(보훈단체 지원)

합천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·단체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·운영

- 2. 호국·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, 전적지 순례비 등
- 3.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
- 4. 호국·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
- 5. 그 밖에 군수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<신설 2021. 12. 31.>

제5조(지급대상 및 지급기준)

- ① 군수는 지급일 현재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전문개정 2021. 12. 31.>
- 1. 지급항목 및 대상
- 가. 참전명예수당: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- 나.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: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
- 다. 보훈예우수당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국가유공자법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. 다만, 가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.
- 라. 유족예우수당: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. 다만 독립유공자유족의 경우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 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- 마. 사망위로금: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
- 바. 명절위문금: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
- 사. 생일축하금: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
- 2. 지급금액
- 가. 참전명예수당: 월 100,000원
- 나.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·보훈예우수당·유족예우수당: 월 50,000원. 다만, 전몰군경의 유족은 월 100,000원으로 한다.
- 다. 사망위로금: 1회 500,000원
- 라. 명절위문금: 연 2회(설, 추석명절) 각 30,000원
- 마. 생일축하금: 연 1회(생일이 도래한 월) 50,000원
- ② 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아니하며,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하나만 지급한다. <신설 2018. 12. 31.>
-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하고, 이를 승계할 수 없다. 다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에 관한 사항은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2조제5항에 따른다. <개정 2018. 12. 31., 2020. 5. 2

7., 2021. 12. 31.>

제6조(지급신청 및 지급결정)

①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.
-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31.> 제7조(보훈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)

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15일에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한다. 다만, 15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신청일로소급하여 지급한다. <단서 신설 2021. 12. 31.>

제8조(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)

-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- 1.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
- 2. 군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
- 3.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

제9조(보훈명예수당의 환수)

-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.
- 1.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
- 2. 거주할 목적이 아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.

제10조(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

군수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

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2255호, 2017. 9. 22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합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
부칙 <제2374호, 2018. 12. 31.>

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438호, 2019. 10. 15.>

이 조례는 2020년 2월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457호, 2019. 12. 12.>

이 조례는 2020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495호, 2020. 5. 27.> 이 조례에 따른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은 2021년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2600호, 2021. 12. 31.>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